

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신고서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1. 회사명	(시스템에서 자동입력)			
2. 회사고유번호	(시스템에서 자동입력)			
3. 법인등록번호	(시스템에서 자동입력)			
4. 회생절차 진행 여부	▼ 해당없음 / 회생절차 진행중			
5. 적용 회계처리기준	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/ 일반기업회계기준			
6.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	▼ 해당 / 해당없음			
6-1.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	▼ 2조원 이상 / 2조원 미만			
7. 사업연도 종료일	yyyy - mm - dd			
8.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	yyyy - mm - dd			
9.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일	yyyy - mm - dd			
10. 제출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종류				
연결 재무상태표	연결 (포괄)손익계산서	연결 자본변동표	연결 현금흐름표	주식
▼제출/미제출	▼제출/미제출	▼제출/미제출	▼제출/미제출	▼제출/미제출
11. 제출할 문서 첨부				
11-1.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공문		공문		
11-2.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(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)		재무제표 (.dsd파일)		
11-3.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(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)		재무제표 (기타파일)		

기재상의 주의

6.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.
8.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.
9.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.
10.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'제출' 또는 '미제출'을 선택한다.
- 11-1. 회사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. 동 문서에는 회사명, 대표이사 직인 및 "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."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 연결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1-2 또는 11-2 항목에 첨부한다.
- 11-2. DART편집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(.dsd)을 11-2 항목에 첨부한다.
- 11-3. 다만,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1-3 항목에 첨부한다.